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차 보건복지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 등〉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1482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 등	3
2. 농수산물 잔류조사 협업체계 구축	18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148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12. 3.
- (3) 회 부 일 : 2025. 12.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 권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

간 등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총리령 및 고시에 규정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결과 제출 의무 및 안전성조사기관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중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는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 위반 사유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및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u>3년</u> 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 --- <u>4년</u>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신 설>

<신 설>

<신 설>

안전성검사기관이 같은 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⑪ 안전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점검·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제9항에 따라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제7항에 따른 결과제출 기한·절차, 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직무범위 및 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

여 업무의 정지를 <u>명할</u>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u>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u> 4. <u>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 반한 경우</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 <u>명하거나 시정명령 을 할</u> -----. -----. 1. 2. (현행과 같음) 3. <u>결과통보서</u>----- -- 4. <u>제64조제7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제출한 경우</u> 5. <u>제6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 항을 위반한 경우</u> 6. <u>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9 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경우</u> 7. <u>제64조제13항에 따른 지정 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u> ② (현행과 같음)
---	---

* 제1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함.

제2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항의 개정규
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제64조제
6항에 따른 지정을 포함함)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함.

나. 검토의견

□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 현행법 제61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그런데, 2023년 6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의 유효기간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⑦ (생략)

정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됨에 따라,²⁾

개정안은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내외 시험·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입법례를 살펴보면,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이 일반적이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관련 입법례 >

[지정의 유효기간 3년]

「식물방역법」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⑨ (생략)

제7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제8조의2(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의 유효기간 4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지정의 유효기간 5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 (생략)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검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정의 유효기간은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점검³⁾하게 되는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유효기간을 짧게 정할수록 시험·검사기관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잦은 재지정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심사가 시험·검사기관과 이를 평가하는 기관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 '25.10.12. 기준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총 5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은 총 1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⁴⁾

□ 한편,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와 관련한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제64조제6항에 따른 지정을 포함함)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음.

□ 적용례란 시행일만으로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73호)에서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었음을 고려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참고 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현황 참조

□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결과 제출 의무 등 법률에 직접 규정) 현행법 제64조⁵⁾에서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고,

총리령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⁶⁾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신청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시 식약처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식약처 고시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및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에 검사결과의 기록·관리 및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등에 출입·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⁷⁾하고 있음.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 또한, 현행법 제65조⁸⁾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③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외에 ④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총리령⁹⁾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별표 3 제2호라목은 검사 업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마목은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바목은 검사 관련 기록, 사목은 검사기간 등, 아목은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사항임.

□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검사 업무 범위, 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결과 제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대한 출입·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참고 2] 참조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참고3] 참조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검사결과와 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안 제64조)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안 제65조)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주요 의무사항 및 지정취소 등의 법령상 근거 개정사항 >

구분	현행 근거	개정안
검사결과 제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6조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2조	개정안 제64조제7항
출입·조사 등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4조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0조	개정안 제64조제9항 부터 제12항까지
지정취소 (업무정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 등	개정안 제65조제1항제4호부 터제8호까지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64조제7항을 제13항으로 하고,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신설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점검·조사 등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64조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근거,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과 관련한 조문으로, 하나의 조문에 항이 너무 많아지면 조문의 체계가 복잡해지고 핵심 규율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또는 출입·점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와 별도로 제12조(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제22조(보고와 출입 등)를 두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및 출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에서는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점검·조사 근거 조항인 제9항 외에 구체적인 출입·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행정조사에 관한 입법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둘째**, 안 제64조제8항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 제65조제1항제5호에서는 제6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 제64조제3항¹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①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업무 범위

3. 검사 분야 또는 유해물질 항목

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추가하고, 안 제64조제8항의 준수사항에서 “검사 업무 범위”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안 제64조제7항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약처고시) 제13조¹¹⁾에서는 검사기관이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검사성적서 등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6조¹²⁾에서는 매분기 종료 후 5일

1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3조(검사대장 등의 기록·관리)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검사성적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검사 대장
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서류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6조(검사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시스템(이하 “SafeQ”라 한다.)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검사기관의 검사 실적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내에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¹³⁾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 따라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결과 제출 의무뿐만 아니라 그 작성·보관 의무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김성원위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646호)이,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결과 제출 의무 등과 관련하여서는 박성훈위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209호)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분	발의자 등	주요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안 (의안번호 제2206209호)	검사결과와 기록·보관·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
	김성원 의원안 (의안번호 제2206646호)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함.

1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제4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6조(검사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시스템(이하 "SafeQ"라 한다.)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검사기관의 검사 실적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농수산물 잔류조사 협업체계 구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잔류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 현행법 제68조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고시인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및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¹⁵⁾하고 있음.

□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재배·생산단계 안전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생산·유통단계 합동조사 및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잔류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② 잔류조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품목별 생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 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 잔류조사의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개정 2018. 12. 13.>

④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료 수거와 분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8조(결과 평가 및 정책 반영 등) ① 식약처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된 농수산물의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8조(잔류조사 평가 및 정책 반영 등) ① 식약처장은 제3조에 따라 실시된 수산물의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설정이나 생산단계 등에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근 4년간 잔류조사 현황〉

연도	농산물			수산물		
	대 상		부적합	대 상		부적합
합계	4,717		9	1,204		6
'22	소계	1,425	8	소계	525	5
	다소비	1000	2(케일)	어패류 등	525	5 (넙치2, 김3)
	단순처리	425	6(리스테리아)			
'23	소계	1,449	-	소계	336	-
	다소비	1,024	-	양식어류	253	-
	단순처리	425	-	낙시터	83	-
'24	소계	1,443	-	소계	320	-
	다소비	1,018	-	양식어류	250	1(돌돔)
	단순처리	425	-	낙시터	70	-
'25	소계	1,511	5	소계	270	-
	다소비	1,029	1(가지)	원양산 등	230	-
	단순처리	447	4(리스테리아)	낙시터	40	-
	오염우려	35	-			

〈현행법상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비교〉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잔류조사
근 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6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
목 적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 농수산물: 식품위생법(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 등) - 농지·용수·자재: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잔류실태 조사하여 유해물질 기준설정 등에 반영
대 상	농수산물 및 농지·어장·용수·자재 등	농수산물 및 농지·어장·용수·자재 등	농수산물
조 사	유해물질	유해물질	조사가 필요*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잔류조사
물 질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곰팡이독소, 미생물, 방사능 등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 등 화학적 요인 • 농수산물의 형태 및 이물 등 물리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 위해가 우려되는 신규 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물질 등
수행 기관	행정권한 위탁으로 농식품부·해수부 수행 • (농산물) 농수산물품질관리원(농식품부 위임) •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과학원(해수부 위임) 및 지자체	식약처 •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물과학원 등에 요청할 수 있음	식약처 • (농산물)평가원 및 지방청, 농식품부,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등에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수산물)한국식품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대학의 연구기관 등에 수행하게 할 수 있음
결과 조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조치 •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농수산물) • 사용금지(자재, 용수 등)	위험평가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 공표 * 위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조사결과 평가 및 안전 정책 반영 * 결과 분석하여 유해물질별 안전성 수준 평가 → 잔류허용기준 설정, 안전관리 정책(안전성조사, 수거검사 등) 반영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현황

□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25.10.21.기준)

연번	기관명	검사분야 (유해물질항목)	최초지정일	유효기간	
				시작일	종료일
1	한국에스지에스(주)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2010-04-23	2024-12-07	2027-12-06
2	(재)한동해산업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2010-04-23	2024-12-07	2027-12-06
3	농협경제지주(주)식품알앤디연구소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0-06-04	2025-05-07	2028-05-06
4	환경자원연구센터(주)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0-09-17	2024-12-07	2027-12-06
5	전주대학교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용수(중금속)	2010-11-08	2024-12-07	2027-12-06
6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2010-11-08	2021-12-07	2025-12-06
7	(주)한국유토피즈 분석서비스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용수(중금속)	2010-11-29	2021-12-07	2025-12-06
8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용수(중금속)	2010-12-30	2024-12-07	2027-12-06
9	(주)오에이티씨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1-12-30	2024-12-07	2027-12-06
10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2-02-27	2025-09-07	2028-09-06
11	(주)한국분석기술연구소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2-10-29	2025-06-07	2028-06-06
12	(주)동진생명연구원	농산물(중금속), 농지(중금속), 용수(중금속), 자재(중금속)	2012-10-29	2021-12-07	2025-12-06
13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2-11-13	2024-12-07	2027-12-06
14	(재)전남바이오진흥원 그린바이오본부 친환경센터	농산물(잔류농약)	2013-01-16	2024-12-07	2027-12-06
1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2013-01-16	2024-12-07	2027-12-06
16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중금속), 용수(중금속)	2013-04-25	2024-12-07	2027-12-06
1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중금속)	2013-04-25	2024-12-07	2027-12-06

연번	기관명	검사분야 (유해물질항목)	최초지정일	유효기간	
				시작일	종료일
18	(주)그린하이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생물독소, 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3-06-20	2024-12-07	2027-12-06
19	제일분석센타(주)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4-02-26	2024-12-07	2027-12-06
20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14-03-07	2021-12-07	2025-12-06
21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주)	농산물(잔류농약)	2014-07-28	2024-12-07	2027-12-06
22	(재)금산인삼약초산업 진흥원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5-03-10	2024-12-07	2027-12-06
23	아이센(주)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5-04-07	2021-12-07	2025-12-06
24	(주)에코아임친환경기술 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5-07-29	2024-12-07	2027-12-06
25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주)	농산물(잔류농약)	2015-08-19	2021-12-07	2025-12-06
26	(주)씨티케이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2015-09-21	2024-12-07	2027-12-06
27	(주)산업공해연구소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생물독소, 잔류농약, 중 금속), 농지(중금속)	2015-12-01	2024-12-07	2027-12-06
28	(주)현농	농산물(잔류농약)	2016-06-15	2024-12-07	2027-12-06
29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농산물(중금속)	2016-06-30	2021-12-07	2025-12-06
30	사단법인 KOTITI시험 연구원	농산물(병원성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농약, 중금속)	2016-11-02	2024-12-07	2027-12-06
31	한경국립대학교 산학 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2017-03-23	2024-12-07	2027-12-06
32	(주)엔텍분석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17-08-24	2024-12-07	2027-12-06
33	(주)네이처앤바이오텍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19-09-17	2025-09-20	2028-09-19
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19-12-16	2022-12-16	2025-12-15
35	(주)피캠코리아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0-01-06	2023-02-06	2026-02-05
36	국립경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2020-12-08	2023-11-16	2026-11-15
37	(주)바이오푸드랩	농산물(잔류농약)	2021-05-25	2024-05-25	2027-05-24

연번	기관명	검사분야 (유해물질항목)	최초지정일	유효기간	
				시작일	종료일
38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잔류농약)	2021-05-25	2024-05-25	2027-05-24
39	(주)아워홈 식품연구원	농산물(방사능, 잔류농약, 중금속)	2021-07-09	2024-07-09	2027-07-08
40	부설기관 동강생물사업단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1-07-23	2024-07-23	2027-07-21
41	(주)분석기술과미래	농산물(잔류농약)	2023-01-16	2023-01-16	2026-01-15
42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2023-08-16	2023-08-16	2026-08-15
43	(주)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	농산물(잔류농약)	2023-12-20	2023-12-20	2026-12-19
44	(주)티에스피분석연구소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4-02-15	2024-02-15	2027-02-14
45	한울생명과학(주)	농산물(잔류농약), 농지 (중금속)	2024-05-22	2024-05-22	2027-05-21
46	(주)캠바이오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4-08-29	2024-08-29	2027-08-28
47	(주)더케이분석센터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5-01-21	2025-01-21	2028-01-20
48	(재)한국환경측정분석원	농지(중금속)	2025-01-21	2025-01-21	2028-01-20
49	국제분석연구원(주)	농산물(잔류농약)	2025-03-12	2025-03-12	2028-03-11
50	(주)현대그린푸드 식품 위생연구소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2025-06-11	2025-06-11	2028-06-10
51	(주)에스에이피분석연구소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농지(중금속)	2025-06-20	2025-06-20	2028-06-19
52	한라분석연구원(주)	농지(중금속)	2025-07-24	2025-07-24	2028-07-23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정, '25.11.3.기준)

연번	기관명	검사분야 (유해물질항목)	지정일	유효기간	
				시작일	종료일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방사능)	2023-08-11	2023-08-11	2026-08-10
2	한국에스지에스(주)	수산물(방사능)	2023-08-17	2023-08-17	2026-08-16
3	(주)이마트	수산물(방사능)	2023-10-17	2023-10-17	2026-10-16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급식사업본부	수산물(방사능)	2023-10-24	2023-10-24	2026-10-23
5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센터	수산물(방사능)	2024-02-07	2024-02-07	2027-02-06
6	수협중앙회 감천항물류 센터	수산물(방사능)	2024-04-02	2024-04-02	2027-04-01
7	(주)한국수산방역기술 안전 성 분석센터	수산물(중금속, 방사능)	2024-04-22	2024-04-22	2027-04-21
8	주식회사 라드솔	수산물(방사능)	2024-07-08	2024-07-08	2027-07-07
9	CJ프레시웨이(주) 식품 안전연구실	수산물(방사능)	2024-09-06	2024-09-06	2027-09-05
10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 구원	수산물(방사능)	2024-11-26	2024-11-26	2027-11-25
11	신일바이오	수산물(방사능)	2024-12-04	2024-12-04	2027-12-03
12	(주)바이오푸드랩	수산물(방사능)	2025-02-19	2025-02-19	2028-02-18
13	(주)고도기술	수산물(방사능)	2025-04-23	2025-04-23	2028-04-22
14	(주)선광티앤에스 방사능 시험분석실	수산물(방사능)	2025-06-24	2025-06-24	2028-06-23
15	(주)한국분석센터	수산물(방사능)	2025-08-19	2025-08-19	2028-08-17
16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수산물(중금속, 방사능)	2025-09-17	2025-09-17	2028-09-16

【참고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등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3조(검사대장 등의 기록·관리)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검사성적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검사 대장
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서류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기관 사후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검사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시스템(이하 "SafeQ"라 한다.)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9조(검사대장 등의 기록·관리)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시험분석성적서
3.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장
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제2호·제3호의 서류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기관 사후관리) ① 원장은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 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참고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4회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이 검사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검사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검사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시료가 아닌 다른 검사시료의 검사 결과를 인	법 제65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라. 검사 업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지정받은 검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 검사한 경우 2)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분석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3) 공시험(본시험과의 대조를 위해 같은 조건에서 분석대상 성분을 제외한 실험) 및 검출된 성분에 확인실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4) 유효기간이 지난 표준물질 등 적정하지 않은 표준물질을 사용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1) 시설·장비·인력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검사능력(숙련도) 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 된 경우 3) 시설·장비·인력 기준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바. 검사 관련 기록 관리 1)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검사 절차·방법, 판정 등의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시험·검사일, 검사자 등 단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5일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15일
사. 검사기간 등 1) 검사기관 지정 등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검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검사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아. 검사성적서 발급 등 1) 검사대상 성분의 표준물질분석을 누락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검사업무 정지 6개월

2) 시료 보관기간을 위반한 경우				
3) 검사과정에서 시료가 바뀌어 검사성적서가 발급된 경우				
4) 의뢰받은 검사항목을 누락하 거나 다른 검사항목을 적용하 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경미한 실수로 검사시료의 결 과 판정을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